

<p>域을 解除하여 財産權을 保護하여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바, 補償은 豫算確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民願을 長期化시키고 있으므로 文化財保護에 問題가 없는 범위 내에서 文化財保護區域을 解除하여 長期的인 民願을 解消코자 하며, 아울러 市長에게 本 請願의 趣旨를 적극 受容하여 文化財保護區域 解除를 위한 가능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.</p> <p>존경하는 議員 여러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配付하여 드린 報告書로 갈음하고자 합니다.</p> <p>本 請願調査小委員會의 심도 있는 審査結果報告와 3회에 걸친 委員會 審査에 의하여 本 意見書案을 提案하는 것입니다.</p> <p>아무쪼록 意見書案대로 可決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</p> <p>감사합니다.</p> <p>○議長 白昌鉉 수고하셨습니다.</p> <p>그러면 風納土城 復元區域 內 未補償部分 補償要求에 관한 請願을 文化教育委員會에서 審査報告한 內容과 같이 市議會의 意見으로 採擇하고자 합니다.</p> <p>尊敬하는 議員 여러분, 異議 없으십니까? (「없습니다」하는 議員 있음)</p> <p>異議 없으시면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. (議事棒 3打)</p>	<p>—제2차 심사: 1994. 12. 26. 제12회 정기회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</p> <p>—제3차 심사: 1994. 4. 11. 제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</p> <p>마. 의결일자: 1995. 4. 11. 제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</p> <p>2. 청원요지</p> <p>제2차 복원계획으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보다 1977년 제1차로 풍납토성 복원사업시 예산부족으로 미보상된 토지 및 건물을 우선적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임.</p> <p>3. 취지설명 요지(소개의원: 김중웅의원)</p> <p>제2차 복원사업('93~'97)중 미보상 부분 건물 19동 4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거주민이 없는 순수토지이므로 실 거주민부터 우선 보상함이 타당함.</p> <p>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: 김장호)</p> <p>—본 청원은 1977년 제1차로 446m를 복원할 당시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전부 보상한 것이 아니고, 실제 풍납토성 복원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만을 보상함으로써,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있으면서 실제 풍납토성과 직접 관계가 적은 토지 및 건물은 미보상된 상태로 존치되고, 제2차 사업 구간내 토지 및 건물은 '93~'94년도에 150억원을 보상함으로써 야기된 청원임.</p> <p>—집행부측의 의견은 풍납토성은 복원되어야 할 것으로 인정되나, 95년도 편성된 예산안은 50억원만 반영되어, 기복원 구간을 보상한다면 95년도에는 미복원 구간 보상이 불가하므로 미복원 구간의 또 다른 집단민원 및 복원사업 기간 지연이 예상되므로, 풍납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함.</p> <p>—그러나 95년도 예산안에는 당초 투자계획대로 200억원을 요구하였으나, 50억원만이 반영되어 95년도 미복원 구간의 집</p>
<p>(參 照)</p> <p>풍납토성복원구역내미보상부분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심사보고서</p> <p>1. 심사경과</p> <p>가. 청원일자및청원인: 1994. 11. 14 송파구 풍납동 78-6 김중문</p> <p>나. 소개의원: 김중웅의원</p> <p>다. 회 부 일 자: 1994. 11. 15</p> <p>라. 상 정 일 자</p> <p>—제1차 심사: 1994. 12. 19.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</p>	

<p>단민원 및 복원사업기간 지연이 예상된다. -따라서 풍납토성의 복원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인정되지만, 미복원구간의 토지 및 건물보상으로 인한 집단민원과 복원사업 기간의 지연이 예상되고, 또한 기 복원구간 보상에 따른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고, 풍납동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 보상 우선순위를 결정한다고 하는 집행부측의 의견이 있는바, 토지 및 건물의 보상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것은 집행부측의 대책을 확인한 후 이 청원을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 및 의결요지</p> <p>가. 제1차 심사: 1994. 12. 19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구성안을 발의.</p> <p>나. 제2차 심사: 1994. 12. 26 제12회 정기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소위원장에 손복, 위원에 김인우·소중천·양원모·최항락위원을 조사소위원회로 구성하기로 의결.</p> <p>1) 제1차 소위원회 -일시: 1995. 3. 13 -장소: 문화교육위원실 -참석자: 손복위원장, 소중천·양원모위원, 문화관광국장, 문화재과장, 송파구청 문화공보실장, 보상계장, 전문위원 -토론요지: 덧붙인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음.(수록 생략) -결정사항: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 의견서 채택안을 제출하기로 결정.</p> <p>다. 제3차 심사: 1995. 4. 11 제76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 -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</p>	<p>-소위원회에서 의견서 채택안을 발의하고 제안설명 -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내용과 의견서 채택안, 그리고 각 위원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,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위원회의 의견서 채택안을 원안대로 의결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내용 덧붙인 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음.(수록 생략)</p> <p>7. 심사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서 채택안대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함.</p> <p>8. 소수의견 없음.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.</p> <p>풍납토성복원구역내미보상부분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에대항의견서안</p> <p>사적 제11호인 풍납토성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1977년 1차 복원시 미보상된 지역(건물: 19동, 세대수: 40세대)은 2차 복원계획(1993~1997년)의 추진 중임에도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해 온 상황에서 본 청원이 당 의회에 제출된바, 당 위원회에서는 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방안과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, 전반적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 조속한 시일내 청원의 취지를 적극 수용하여 장기적인 집단민원을 해소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95. 4. 18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서울특별시장 귀하</p>
--	---